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

## I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2258호
-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16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## II. 제안이유

-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국제도시 분야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

## III. 주요내용

- 가. ‘국제도시과학대학원’을 ‘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’으로 변경하고,  
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(안 제5조)

## I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 1. 개정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국제도시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 시립대학교의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됨.

### 2.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현황 및 전문대학원 전환

-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지난 2013년 특수대학원으로 설립되어 현재 한국인 대상 3개 학과(글로벌건설학과,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, 국제개발협력학과)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위한 4개의 석사학위 프로그램 및 2개의 비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며, 2024년 7월 기준으로 한국인 233명과 외국인 547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한국인 60명과 외국인 118명이 재학 중임.
- 한편 최근 공적개발원조(ODA)<sup>1)</sup>의 규모 확대와 해외건설 계약의 증가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 대학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어 서울시로부터 실무 중심 교육과 글로벌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.
- 이러한 배경에서 시립대는 동 대학원을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고<sup>2)</sup> 타 대학원 학생들과의 수업 공유가 제한적이며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

1) 공적개발원조(ODA)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, 사회적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돈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, 2024년 공적개발원조(ODA) 예산은 총 6조 2,629억원으로 2023년 대비 31.3% 증가했으며, 2025년도에도 8.5% 늘어난 6.8조원으로 증액됨.

2)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(대학원의 학위과정)에 따르면,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설치 가능한 반면, 전문대학원은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를 설치할 수 있음.

구조적 제약<sup>3)</sup>이 있는 특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설치와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<sup>4)</sup>이 가능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5조(대학원)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을 두며,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법 제29조의2제1항 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원, 디자인전문대학원, <u>법학전문대학원</u></li> <li>3. 법 제29조의2제1항 제3호의 특수대학원으로 도시과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과학기술대학원, 교육대학원, <u>국제도시과학대학원</u>, 도시보건대학원</li> </ol> | <p>제5조(대학원)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<br/>----- <u>법학전문대학원</u>, <u>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</u></li> <li>3.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도시보건대학원</u></li> </ol> |

### <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비교 >

| 구분   | 전문대학원           | 특수대학원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목적 | 전문 직업분야의 전문가 양성 |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교육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 |
| 수업형태 | 주간(또는 야간)       | 야간(계절 또는 주간)               |
| 학위과정 | 석사과정<br>박사과정    | 석사과정<br>(박사과정은 없음)         |
| 학위수여 | 전문학위 또는 학술학위    | 전문학위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내용 |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교육 |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             |
| 배출인력 |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 양성  | 직업인의 계속 교육                 |

- 이를 통해 시립대는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과정 1개 정원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, 동 대학원의 영어 수업을

---

3)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의 제한된 학위 수여, 야간 또는 계절 수업의 형태 제한 등 구조적으로 전문대학원에 비해 더 혐소하고 제한적인 교육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음.

4) 증가추세인 도시·건설·환경·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영어과목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한계로 수업공유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, 전문대학원 전환 시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영어수업을 타 일반대학원 학생 및 교환학생에게 원활히 제공이 가능함.

타 일반대학원 학생 및 교환학생과 공유함으로써 시립대 내의 다른 교육과정과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.

### <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계획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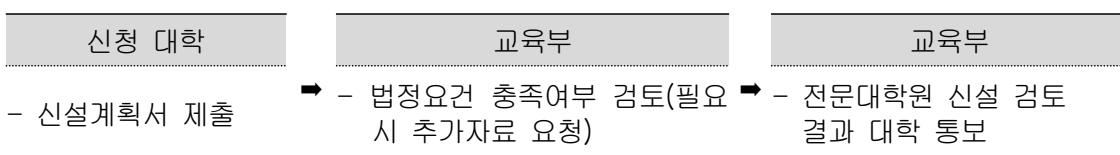
| 설치학과명      | 입학정원(수업연한) |         |      | 총 정원(명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| 석사과정(명)    | 박사과정(명) | 계(명) |         |
| 글로벌건설학과    | 10         | 0       | 10   | 30      |
|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| 10         | 0       | 10   |         |
| 국제개발협력학과   | 9          | 1       | 10   |         |

- 기준 3개 학과 틀과 전체 30명 TO 유지\*
-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TO 1개를 박사 TO 1개로 전환\*\*

\* \*\* '24.4. 교육부 방침 상 학사, 석사, 박사과정 입학정원 간 1:1:1 비율로 조정 가능

- 참고로 대학원 유형의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「고등교육법」<sup>5)</sup> 제29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원 신설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인 「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」을 매년 공시하고 있음.
- 그리고 동 기준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, 그 과정에서 교원 확보율과 교사 시설 확보율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.

### < 전문대학원 설치 절차 >



5)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(대학원의 종류)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 
 1. 일반대학원: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
 2. 전문대학원: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
 3. 특수대학원: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

## < 전문대학원 신설 요건 >

### ① 교원확보 원칙 및 기준

- 전문대학원 소속 전임 교원확보 원칙(1/3이내 겸임교원 등 배치 가능)
- 다만, 신설분야 교원 인력 부족, 여건에 따른 신임 교원 총원 곤란 등의 경우에는 타 학부(대학원) 교원 겸직(1/3 범위 내)으로 확보 가능

#### < 관련 규정 및 기준 >

- (교원확보율 산출 기준)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6조제2항제2호<sup>6)</sup> 및 별표5<sup>7)</sup>
- (교원확보 시점) 신설 학년도 기준 교원의 1/2이상, 차년도(편제완성연도) 완전 확보
- (학생 편제정원 기준) 편제정원(입학정원) 100명 미만일 경우 100명 기준 적용<sup>8)</sup>
- (교원연구 실적) 박사과정 신설 시 7명 이상 관련 분야 교원 확보

### ② 교사시설 확보 원칙 및 기준

- 전문대학원은 교사시설을 별도 확보하되, 필요시 타 대학원 등의 교사(기본시설) 공동 활용도 가능

#### < 관련 규정 및 기준 >

- (교사확보율 기준)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2항 및 별표3
- 전문대학원 교사(기본시설)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(m<sup>2</sup>): 인문·사회(12), 자연·과학·공학·예·체능·의학(14)
- (학생 편제정원 기준) 편제정원 100명 미만일 경우 100명 기준 적용

- 이에 따라 시립대는 지난 2024년 9월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 및 교사시설 확보 기준을 충족하였는바,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원 분류 체계 및 교육부의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있어 법적·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)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6조(교원)  
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.

1. 대학원이 없는 대학 : 대학의 학생정원
2. 대학원이 있는 대학 :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.5배를 합한 학생수
3. 대학원대학 : 대학원 학생정원의 1.5배의 학생수

7)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 5 교원산출기준

| 계열별       | 인문·사회 | 자연과학 | 공학 | 예·체능 | 의학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|
| 교원1인당 학생수 | 25    | 20   | 20 | 20   | 8  |

8)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이 30명이므로, 교원 확보율 산정 시 100명 이하 기준을 적용함.

## <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원 및 교사 확보 현황 >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확보 기준<br>(A)* <sup>1</sup> | 확보(B)* <sup>2</sup> | 확보 계획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합 여부* <sup>4</sup>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향후 계획* <sup>3</sup> |   |   |   | 계<br>(E=B+C+D<br>or B+C)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교원<br>(명)           | 교원<br>(구, 전임교원)            | 7 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     | 적합 |
|                     | 겸임 등 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     | 13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                  |    |
| 교사(m <sup>o</sup>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                  | 753.45              | / | / | / | /                        | 753.45              | 적합 |

\* 1 확보기준 : 교원은 학생 총정원(편제정원) 1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기준을 적용(교원 확보 최소기준 : 인문사회계열 6명, 예체능/공학/자연계열 8명) / 교사는 학위과정별 편제정원×계열별 교사면적(인문사회 12m<sup>o</sup>, 공학/자연과학/예·체능 14m<sup>o</sup>)

\* 2 확보현황 : '24.8월 현재 확보한 교원 수 및 면적을 기재

\* 3 확보계획: 교원은 '24.10.1.기준, '25.3.1.기준, '25.10.1.기준, '26.3.1.기준으로 구분하여 신규 채용계획으로 작성하고, 교사는 '25.3.1.기준 확보 가능 면적으로 작성

\* 4 적합 여부 판정 : 교원은 '26.3.1.기준/ 교사는 '25.3.1.기준

\* 5 겸임교원 등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원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입법조사관 | 연락처          |
| 김수은   | 02-2180-8064 |